

복식문화학회 (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)

「복식문화연구 (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)」 편집위원회규정

제정일: 1993년 4월 20일
최근 개정일: 2021년 8월 11일

1. 목적

본 규정은 “복식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”을 정리한 것으로,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학회지 발간

복식문화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학회지 명칭은 『복식문화연구(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)』라 한다.
- 2)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, 발행일은 2, 4, 6, 8, 10, 12월의 말 일로 한다. 필요에 따라 “증보판”을 발행할 수 있다.
- 3)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,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.
- 4) 발행된 학회지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발행인이 갖는다.

3. 편집위원회 구성

- 1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,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편집위원장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3) 편집위원 선정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「편집위원 선정위원회」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4)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5) 「편집위원 선정위원회」에서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.
 - (1)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섬유 및 패션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학자나 전문가로 한다.
 - (2) 편집위원은 최근 섬유 및 패션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.
 - (3) 편집위원 선정시 섬유 및 패션관련 다양한 전공분야가 균형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.
 - (4)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4. 편집위원의 주요 업무

- 1)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최종 검토
- 2) 편집관련 규정의 검토, 제정 및 개정
- 3) 편집관련 업무의 계획과 운영 참여
- 4) 기타 학술지 관련 사항

5. 편집위원회 운영

- 1) 편집위원회는 『복식문화연구』 발간을 위해 정기 편집위원회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2)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/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- 3)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)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나 서면/온라인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.
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